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5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박병찬 전략물자관리팀장, 윤한성 사무관(2110-4841)		

非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개선으로 수출문턱 낮춘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을 통한 非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개선-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非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대상 간소화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 등 **수출 허가요건을 개선**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5.1(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기술·S/W

□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의 주요골자는 **非전략물자 수출시 '상황허가* 대상축소'**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규범 준수의 원칙하에 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완화 및 수출통제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둠

* 상황허가 : 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우려거래자와의 거래 등 WMD 전용 우려 징후가 있을 경우에 전략물자에 준하여 수출허가

○ 우선, **상황허가의 대상**이 되는 **우려거래자* 범위**를 기존의 UN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지정 우려거래자에서, UN 지정 우려거래자로 **대폭 축소(개정전 7,188건→개정후 635건)**하는 한편,

* 우려거래자 : WMD 전용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으로 지정된 기업 등으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게시

○ 대량파괴무기 전용가능성이 없는 품목을 **상황허가 면제품목*으로 별도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함

* **상황허가 면제품목** : 곡물, 직물, 식료품 등 **HS코드 2단위 기준 43종**

□ 금번 제도개선은 다수의 전략물자 수출기업이 구조적인 영세성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등이 부족하여 **불법수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 불법수출 행정처분 기업 수 : ('07)10→('08)14→('09)5→('10)17→('11)21

○ 동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기업의 **수출문턱을 낮추고, 불법수출** 및 이로 인한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 국가신뢰도 저하** 등을 **크게 예방**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규범준수를 위해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

○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 등과의 **국제 동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 수출허가 및 통관절차 진행시, 유관기관과 **허가대상 우려거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사전확인 및 심사·검사를 강화**하며,

- 국가정보원·관세청·해양경찰청 등 **조사·단속기관**에 대한 **전략물자부문의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여 불법수출 조사·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지도 및 중소기업 대상의 무료 컨설팅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통제 제도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임

□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임

참고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개요

□ 국제사회 제도동향

○ 9.11테러 이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가 국제안보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기술·S/W

- UN은 안보리결의 1540호('04.4)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국제규범화하는 한편 회원국들에게 수출통제 법제화 및 이행을 의무화

-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등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재래식무기, 원자력, 생화학, 미사일 등 WMD 관련품목을 전략물자로 지정·관리

＊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회원국은 WMD 전용가능성이 우려되는 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전략물자에 준하여 관리(상황허가, catch all)

《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

통제체제	통제대상 물자기술	통제품목	회원국	발족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핵무기	241개	46개국	'78년
호주그룹 (AG)	생화학무기	219개	41개국	'85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및 운반체	185개	34개국	'87년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	759개	41개국	'96년
합 계		1,404개 / HS (10단위) 1,966개		

□ 우리나라 주요 제도운영 현황

○ **(기반조성)**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관리제도 도입('87) 및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구축('05), 전략물자관리원 설립('07) 등 관련 기반 조성

○ **(수출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지정한 통제품목(전략물자) 수출시 유관부처 허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조치

＊ 지경부(이중용도품목), 방사청(군용물자), 원자력안전위(원자력전용품목) 등
＊ 7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가액 5배이하 벌금, 3년이내 전략물자 교역금지 등

○ **(상황허가)** 非전략물자도 WMD 제조 등에 전용 우려시 허가조치('03)